

서울특별시의회  
제284회 정례회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안 설명



2018. 12. 17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김 창 원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더불어민주당 도봉 3선거구의 김 창 원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

「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 
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의 대중화로 시민들이 보행 중 기기의 이용으로 인해 보행자와 보행자간의 충돌 및 각종 사고로 이어지면서 안전 대책 마련과 시민 제도 활동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입니다.

□ 기존의 조례는 각종 시설물들이 산재하여 보행이 불편한 구조인 서울로 7017 이용시 물건 투척, 음주·흡연, 각종 시설물 훼손 등 일정한 행위와 허가받지 아니한 상행위와 바퀴 달린 차량의 운행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이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해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.

□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

서울로 7017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행위 제한 사항에 ‘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’를 포함하고 제한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 
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 
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